

치과에 근무하는 치과보조인력의 업무실태

이숙정, 조혜연*

신라대학교 치위생학과

Work reality of dental assistant

Sook-Jeong Lee, Hye-Yeon Cho*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Silla University

요약 우리나라의 구강보조인력 중 치과위생사 업무와 치과 근무 간호조무사의 업무가 상당히 겹쳐 있고, 진료실 내부로 치과기공사 및 병원코디네이터가 깊숙이 들어와 있어 각 직종간의 업무영역으로 인해 마찰을 빚고 있다. 그리하여 이러한 직종 간 명확한 업무의 구분과 업무범위에 대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치과 병·의원에 근무하는 치과보조인력의 업무 실태에 대해서 치과위생사의 법정업무를 중심으로 한 10개의 업무를 빈도분석 및 분산분석을 이용하여 비교 제시하였다. 치과위생사의 법정 업무를 중심으로 한 10개의 업무 중 대표적인 항목 스퀘어링을 비교한 결과, 치과기공사가 9(75%)명, 간호조무사가 64(87.67%)명, 기타에 체크한 사람이 11(64.71%)명이 시행하고 있어, 치과위생사를 제외한 치과보조인력이 치과위생사의 법정고유 업무를 많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치과의료기관이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갖추고, 구강보조인력의 역할과 업무범위에 대한 정책적 방안이 제시될 필요성이 권장된다.

• **Key Words** : 치과위생사, 치과보조인력, 업무실태, 업무범위, 만족도

Abstract Dental assistant in South Korea, The work is overlapped considerably between dental hygienist and dental practical nurse. Moreover, dental technician, hospital coordinator work in dentistry consultation deeply. It cause friction among work scope of occupation's type. Accordingly It is purpose to get basic data which is necessary to deduce division of work training and utilization of human resources in oral health distinguish clearly between business occupations. Also compared and analyzed via analysis of frequency and ANOVA above 10 works around something legal work of dental hygienist regarding work reality of dental assistant in dental clinic and hospital. Compare with scaling, representative item about 10 works center on legal work of dental hygienist, is implementing dental technician 9(75%), practical nurse 64(87.67%), etc. 11(64.71%). Dental assistant except dental hygienist is implementing indigenous legal work of dental hygienist. Dental institution secure enough man power, It is suggested necessity for policy means regarding role and work scope of dental assistant.

• **Key Words** : Dental hygienist, Dental assistants, Work reality, Work scop, Satisfaction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오늘날 평균 수명의 증가로 국민의 구강건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치과의료기관의 수가 증가하고 구강보건지식을 갖춘 전문적인 인력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교신저자 : 조혜연(rmsus1224@naver.com)

접수일 2015년 7월 9일

수정일 2015년 8월 14일

게재확정일 2015년 8월 20일

[1]. 치과진료에 관련된 전문적인 인력의 구성에는 주 인력인 치과 의사가 있고, 치과 의사를 도와주는 보조인력에는 치과 위생사, 치과 기공사 및 치과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에서부터 병원코디네이터 등 다양한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2]. 여러 선진국에서도 치과 진료기술의 전문화로 치과진료에 관련된 인력들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선진국에서는 치과 위생사와 함께 구강진료 보조원이 필요한 만큼 양성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치과 위생사만이 양성된다[3]. 우리나라 치과 위생사의 업무범위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6항에 따르면 치석 등 침착물 제거, 불소도포,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의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 및 제거, 그 밖에 치아 및 구강 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 이 경우 『의료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에 맞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업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4]. 이러한 법정고유 업무가 가능한 치과 위생사가 2009년 기준으로 1/4 분기 20,264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치과병의원은 2008년도 기준 27,576개로 나타났다[5]. 이것으로 보아, 전국의 치과 병·의원에서는 진료보조업무까지 모두 담당할 만큼의 치과 위생사가 충분하지 않아, 이러한 공백을 치과 위생사를 제외한 치과 보조인력인 치과 기공사, 치과 근무 간호조무사, 병원코디네이터가 배우는 등 이러한 현재의 인력 형태가 기형적인 양상을 띠고 있어[6], 질적인 구강 보건 서비스의 향상이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7].

치과 위생사를 제외한 치과 보조인력의 업무범위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치과 기공사의 업무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5항에 따르면 치과 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작업 모형, 보철물, 임플란트 맞춤 지대주 및 상부구조, 충전물, 교정장치 등 치과 기공물의 제작, 수리 또는 가공, 그 밖의 치과 기공업무로 규정하고 있고 [8], 간호조무사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 간호업무 보조에 관한 업무, 진료의 보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9]. 병원코디네이터는 환자 상담과 지속관리, 직원 친절 서비스 교육, 병원 이미지 개선을 위한 일을 하고, 전화, 메일 등으로 상담을 하며, 환자의 예약관리와 접수·수납 및 병원의 약속관리, 진료를 마친 환자에게 치료에 대한 설명과 주의사항, 처방전 등을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10]. 이와 같이 치

과 보조인력 간의 업무범위에 대해서 법적으로 구분되어 있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르면 의료기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11]. 하지만 다양한 구강보조인력 중 우리나라의 치과 위생사 업무와 치과 근무 간호조무사의 업무가 상당히 겹쳐 있고, 진료실 내부로 치과 기공사 및 병원코디네이터가 깊숙이 들어와 있어 각 직종간의 업무영역으로 인해 마찰을 빚고 있다. 이러한 업무영역의 마찰이 치과 진료실 내에서 인력 간 불화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대책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치과 보조인력 중 치과 위생사를 제외한 치과 기공사, 치과 근무 간호조무사, 병원코디네이터를 중심으로 업무실태를 조사하였다. 그리하여 이러한 직종 간 명확한 업무의 구분과 합리적인 구강보건인력자원의 양성 및 활용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목적으로,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에 근무하는 치과 보조인력의 업무 실태에 대해서 비교분석 제시 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소재지의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에 근무하는 치과 보조인력을 대상으로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설문지의 배포 및 회수는 직접 방문 및 우편 등을 통하여 2015년 4월 27일부터 6월 18일까지 배포된 총 392부 중 치과 위생사를 제외한 치과 보조인력 중 간호조무사, 치과 기공사, 기타에 체크한 102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2.2 연구 도구

설문의 문항은 치과 위생사의 업무 확장에 관한 조사 연구[13], 신입 치과 위생사의 프리셉터쉽 코스 이수 현황과 인식분석[14]에 사용하였던 설문지를 기초로 하여 수정, 보완 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조사의 내용은 일반적인 특성 및 업무의 범위에 대한 본인의 만족도 및 생각을 알아보는 항목과 업무의 분류를 비 진료영역과 진료 영역으로 구분하여 나누었다. 비 진료영역에서는 데스크 6문항, 기구멸균 4문항, 구강 내, 외 촬영 4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진료영역에서는 마취 2문항, 치주과 6문항, 구강 외과 7문항, 보존과 8문항, 보철과 13문항, 교정과 7문항,

예방과 5분항으로 구성하였다. 이 중 치과위생사의 법정 업무를 중심으로 하여 비 진료영역으로 구분한 구강내방사선촬영, 구강외방사선촬영과 진료영역으로 구분한 스케링, 임시충진, 알지네이트 인상채득, 러버 인상채득, 불소도포, 치면열구전색술, 환자별 칫솔질 교육, 구강 위생 보조용품 교육 등 총 10개의 항목으로 분류한 것이 이번 연구에 사용되었다. 숙련도의 측정 수준은 5점 척도로서 “숙달되게 잘한다.” 5점, “보통보다 잘한다.” 4점, “보통이다.” 3점, “미숙하게 한다.” 2점, “전혀 못한다.” 1점으로 점수화 하였다.

2.3 통계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Ver. 2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에 대해서는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비 진료 영역과 진료 영역의 업무 숙련도에 대해서는 분산분석(ANOVA)를 이용하여 실시하였으며, Duncan의 다중비교방법을 이용한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서는 연령은 20-30대 미만이 69(67.65%)명으로 30대 이상보다 더 많았으며, 직종에서는 치과기공사가 12(11.76%)명, 간호조무사가 73(71.57%)명, 기타에 체크한 사람은 17(16.67%)명이었다. 이 때 기타에 체크한 사람은 병원코디네이터가 대부분 이었고, 그 외 면허 및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도 포함 되었다. 학력은 전문대졸 67(65.69%)명으로 가장 많았고, 치과 형태에서는 치과의원이 92(90.2%)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력은 3년 미만이 41(40.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세미나의 횟수는 1-2회 정도가 39(38.24%)명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Table 1>.

<Table 1> General specification of research

Item	Division	Frequency	%
Age	20-30 less than	69	67.65
	30 more than	33	32.35
Level of education	High school diploma	16	15.69
	College diploma	67	65.69

	Bachelor's degree	17	16.67
	More than master	2	1.96
Type of occupation	Dental technician	12	11.76
	nurse aide	73	71.57
	etc.	17	16.67
Type of dentist	Dental clinic	92	90.20
	Dental hospital	10	9.80
	etc.	0	0.00
Career	3 years less than	41	40.20
	3 years more than - 5 years less than	20	19.61
	5 years more than - 10 years less than	24	23.53
	10 years more than	17	16.67
Number of seminar	None	25	24.51
	1-2	39	38.24
	3-4	17	16.67
	5 more than	21	20.59
Total		102	100(%)

3.2 업무의 시행 여부

3.2.1 비 진료영역

치과위생사의 법정업무를 중심으로 한 10개의 항목 중 비 진료영역으로 구분한 구강내방사선촬영과 구강외방사선촬영의 시행 여부를 치과기공사, 간호조무사, 기타로 나누어 알아본 결과, 구강내방사선촬영을 12명의 치과기공사 중 10(83.33%)명, 73명의 간호조무사 중 66(90.41%)명, 17명의 기타에 체크한 사람 중 13(76.46%)명이 시행하고 있었으며, 구강외방사선촬영을 치과기공사가 11(91.67%)명, 간호조무사가 66(90.41%)명, 기타에 체크한 사람 중 12(70.69%)명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Enforcement or not in none treatment scope

Item	Dental technician		Nurse aide		etc.	
	A (N)	B (%)	A (N)	B (%)	A (N)	B (%)
Intraoral Radiography	10	83.33	66	90.41	13	76.47
Extraoral Radiography	11	91.67	66	90.41	12	70.59

A: Enforcement, B: Enforcement rate

3.2.2 진료영역

치과위생사의 법정업무를 중심으로 한 10개의 항목 중 진료영역으로 구분한 스켈링, 임시충전, 알지네이트 인상채득, 러버 인상채득, 불소도포, 치면열구전색술, 환자별 칫솔질 교육, 구강 위생 보조용품 교육업무를 시행 여부를 치과기공사, 간호조무사, 기타로 나누어 알아본 결과, 스켈링을 12명의 치과기공사 중 9(75%)명, 73명의 간호조무사 중 64(87.67%)명, 17명의 기타에 체크한 사람 중 11(64.71%)명이 시행하고 있었다. 불소도포는 치과기공사가 7(58.33%)명, 간호조무사가 57(78.08%)명, 기타에 체크한 사람 중 10(58.82%)명이 시행하고 있었고, 치면열구전색술은 치과기공사가 6(50%)명, 간호조무사가 50(68.49%)명, 기타에 체크한 사람은 9(52.94%)명이 시행하고 있었다. 환자별 칫솔질 교육에서는 치과기공사가 11(91.67%)명, 간호조무사가 69(94.52%)명, 기타에 체크한 사람은 17(100%)명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Table 3> Enenforcement or not in treatment scope

Item	Dental technician		Nurse aide		etc.	
	A (N)	B (%)	A (N)	B (%)	A (N)	B (%)
Scaling	9	75	64	87.67	11	64.71
Temporary Filling	10	83.33	55	75.34	10	58.82
Alginate impression	12	100	64	87.67	10	58.82
Rubber impression	12	100	58	79.45	9	52.94
Fluorine Coating	7	58.33	57	78.08	10	58.82
Sealant	6	50	50	68.49	9	52.94
Tooth Brushing Method	11	91.67	69	94.52	17	100
Oral hygiene device Method	11	91.67	69	94.52	16	94.12

A: Enforcement, B: Enforcement rate

3.2.3 비 진료 영역 및 진료 영역의 숙련도

비 진료 영역 및 진료 영역의 숙련도를 알아본 결과, 대부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스켈링 및 구강 위생 보조용품 교육 영역에서는 간호조무사의 숙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기공사는 알지네이트 인상채득 및

러버 인상채득 영역에서 숙련도가 높았으며, 기타에 체크한 사람에서는 구강 위생 보조용품 교육 영역의 숙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4> Skill level of none treatment scope and treatment scope

scope	Division	Dental technician	Nurse aide	etc.	P
None Treatment scope	A	3±1.6ab	3.66±1.55a	2.29±1.9b	0.007*
	B	3.58±1.38ab	3.78±1.53a	2.59±1.94b	0.024*
Treatment scope	C	2.5±2.11b	3.71±1.72a	1.88±1.87b	0.024*
	D	2.92±2.02a	2.96±2.04a	1.59±2.03a	0.001*
	E	4.25±1.29a	3.64±1.64a	1.82±1.94b	0.046*
	F	4±1.6a	3.29±1.88a	1.41±1.84b	0.001*
	G	2.33±2.35ab	3.3±1.92a	1.71±1.99b	0.001*
	H	1.67±2.19a	2.59±2.04a	1.29±1.79a	0.008*
	I	3±1.6	3.76±1.2	3.76±1.2	0.036*
	J	2.83±1.47b	3.29±1.53ab	3.29±1.53ab	0.106

A : Intraoral Radiography, B : Extraoral Radiography, C : Scaling, D : Temporary Filling, E : Alginate impression, F : Rubber impression, G : Fluorine Coating, H : Sealant, I : Tooth Brushing Method, J : Oral hygiene device Method
* : P < 0.05

3.2.4 업무행위의 만족도 및 업무범위에 대한 생각

현재 행하고 있는 업무 행위에 대한 만족도 및 업무 범위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는 항목에서는 치과기공사, 간호조무사, 기타에서 대부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Table 5> Satisfaction of work action, thinking for work scope

Division	Dental technician	Nurse aide	etc	P
Satisfaction	3.25±0.75	3.42±0.97	3.18±0.53	0.527
Thinking	3.25±0.97	3.04±0.73	2.88±0.6	0.427

* P < 0.05

4. 고찰

국민의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도의 증가는 치과의료기관 수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러한 증가는 전문적인 구강보건인력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1]. 전문적인 인력의 구성에는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를 도와주는 보조인력이 있다. 이러한 치과보조인력의 구성에는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 근무 간호조무사, 병원코디네이터 등 다양한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전문적인 구강보건인력간의 제 역할에 따른 명확한 업무의 구분이 없고 각 인력간의 업무가 겹쳐져 마찰을 빚고 있으며, 질적인 구강보건 서비스를 저하 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직군 간 명확한 업무의 구분과 합리적인 구강보건인력자원의 양성 및 활용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목적으로, 치과위생사를 제외한 치과보조인력의 업무실태를 치과위생사의 법정업무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여, 그 실태를 알아보고자 한다.

치과보조인력 중 치과위생사를 제외한 치과기공사, 간호조무사, 기타에 체크한 사람으로 나누어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은 20-30대 미만이 69(67.65%)명으로 30대 이상보다 더 많았고, 학력은 전문대졸 67(65.69%)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 형태에서는 치과의원이 92(90.2%)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력은 3년 미만이 41(40.2%)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위생사의 법정업무를 중심으로 한 10개의 항목 중 비 진료영역으로 구분한 구강내방사선촬영과 구강외방사선촬영의 시행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면, 구강내방사선촬영을 12명의 치과기공사 중 10(83.33%)명, 73명의 간호조무사 중 66(90.41%)명, 17명의 기타에 체크한 사람 중 13(76.46%)명이 시행하고 있었으며, 구강외방사선촬영을 치과기공사가 11(91.67%)명, 간호조무사가 66(90.41%)명, 기타에 체크한 사람 중 12(70.69%)명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15]의 연구결과에서 간호조무사의 업무 시행율을 비교한 결과 구강내방사선촬영이 97%, 구강외방사선촬영이 94%인 것으로 나타나 치과위생사의 법정업무 중 하나인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 업무의 시행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그리고 치과위생사의 법정업무를 중심으로 한 10개의 항목 중 진료영역에서는 스킨링을 치과기공사가 9(75%)명, 간호조무사가 64(87.67%)명, 기타에 체크한 사람이 11(64.71%)명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15]의 연구결과에서는 간호조무사의 스킨링 시행

율이 91%인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보다 높은 시행율을 보였다. 이는 김[15]의 연구에서의 간호조무사의 대상자 수가 본 연구에서의 간호조무사의 대상자 수 보다 많아서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불소도포는 치과기공사가 7(58.33%)명, 간호조무사가 57(78.08%)명, 기타에 체크한 사람은 10(58.82%)명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15]의 연구결과에서는 간호조무사의 불소도포 시행율이 55%인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치면열구전색술은 치과기공사가 6(50%)명, 간호조무사가 50(68.49%)명, 기타에 체크한 사람은 9(52.94%)명이 시행하고 있었다. 김[15]의 연구결과에서는 간호조무사의 치면열구전색술 시행율이 5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15]의 연구 시행 당시 치면열구전색술이 건강보험 적용되기 이전이었으므로, 현재 치면열구전색술이 건강보험 항목으로 적용되어 보다 높은 시행율을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환자별 칫솔질 교육에서는 치과기공사가 11(91.67%)명, 간호조무사가 69(94.52%)명, 기타에 체크한 사람은 17(100%)명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15]의 연구결과에서는 간호조무사의 환자별 칫솔질 교육의 시행율이 95%인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천대진 외[16]의 연구에 따르면 치과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환자에 대한 치과상식 교육을 대부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의 환자별 칫솔질 교육의 시행율이 높은 것은 이와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르면 의료기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고, 각 업무 범위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과기공사 및 간호조무사, 그리고 병원코디네이터가 치과위생사의 법적인 업무를 많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과위생사의 법적인 업무 중 치과위생사만이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고유 업무인 스킨링(치석제거) 및 예방업무 등이 실제 임상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어 전문성이 결여되어 문제가 될 수 있다.

직군별 명확한 업무의 구분이 없어 혼재되어 있는 현 치과계의 임상적 현실 문제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치과의료기관이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갖추고, 업무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17]. 또한, 구강보조인력 간의 업무영역 마찰이 인력 간 불화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구강보건인력의 업무영역에 대한 정책적 방안의 필요성 권장 및

융합적인 사고가 제시되어야 할 것 이다[18].

이 논문의 제한점으로 부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만으로 대상 지역을 제한했다는 점과 치과보조인력을 구분하는데 있어서 치과위생사를 제외하고 치과기공사 및 치과 근무 간호조무사, 기타의 대상자의 표본 수가 적다는 점, 대상자의 분류 중 기타를 보다 세부적으로 나누어 조사하지 않은 점들을 들 수 있다. 또한, 치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업무에 대한 이전의 선행 연구가 없고, 특히 치과기공사 및 병원코디네이터의 진료 영역의 업무 시행에 관련된 선행 연구도 찾을 수 없어 본 연구와 비교 분석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은 연구가 시행되고 있지 않은 치과보조인력의 업무 실태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향후 치과위생사 및 치과기공사, 치과 근무 간호조무사, 병원코디네이터 등 이러한 구강보조인력간의 명확한 업무의 구분과 합리적인 구강보조인력자원의 양성 및 활용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했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5. 결론

본 연구는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에 근무하는 치과보조인력을 대상으로 2015년에 실시한 총 392부 중 치과위생사를 제외한 치과보조인력 중 간호조무사, 치과기공사, 기타에 체크한 102부를 대상으로하여 치과보조인력의 업무실태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여 다음의 결론을 얻었다.

첫째, 치과위생사의 법정업무를 중심으로 한 10개의 항목 중 비 진료영역에서 구강내방사선촬영을 치과기공사 10(83.33%)명, 간호조무사 66(90.41%)명, 기타에 체크한 사람은 13(76.46%)명으로 나타났으며, 구강외방사선촬영을 치과기공사 11(91.67%)명, 간호조무사 66(90.41%)명, 기타에 체크한 사람은 12(70.69%)명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치과위생사의 법정업무를 중심으로 한 10개의 항목 중 진료영역에서는 스켈링을 치과기공사 9(75%)명, 간호조무사 64(87.67%)명, 기타에 체크한 사람이 11(64.71%)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소도포는 치과기공사 7(58.33%)명, 간호조무사 57(78.08%)명, 기타에 체크한 사람은 10(58.82%)명으로 나타났다. 치면열구전색은 치과기공사 6(50%)명, 간호조무사 50(68.49%)명, 기타에 체크한 사람은 9(52.94%)명으로 나타났으며, 환자

별 칫솔질 교육에서는 치과기공사 11(91.67%)명, 간호조무사 69(94.52%)명, 기타에 체크한 사람은 17(100%)명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비 진료 영역 및 진료 영역의 숙련도는 대부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스켈링 및 구강 위생 보조용품 교육 영역에서는 간호조무사의 숙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기공사는 알지네이트 인상채득 및 러버 인상채득 영역에서 숙련도가 높았으며, 기타에서는 구강 위생 보조용품 교육 영역의 숙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현재 행하고 있는 업무 행위에 대한 만족도 및 업무 범위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는 항목에서는 치과기공사, 간호조무사, 기타에서 대부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치과위생사의 법적 고유 업무인 스켈링 및 예방업무를 치과기공사 및 간호조무사, 기타에 체크한 병원코디네이터, 자격 및 면허가 없는 사람이 많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문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되었다. 그리하여 치과의료기관이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갖추고, 구강보조인력의 역할과 업무범위에 대한 정책적 방안이 제시될 필요성이 권장된다.

REFERENCES

- [1] So-Young Park, Young-Soon Won, Jeong-Suk Kim, "Use and Work Scope of Oral Health Assistance Personnel as Perceived by Dentis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 6, No. 4, 1-12, 2012
- [2] Jong-Bae Kim, Yu-Jin Choi, Hyeok-Su Moon, Jin-Beom Kim, Dong-Gi Kim, Heung-Su Yi, Deok-Young Park, Public Oral Health, Gomunsa, pp. 557-632, 2009
- [3] Hyeon-Suk Jang, "Demand and supply planning for the dental professions",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pp.67-90, 2003
- [4]http://www.m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286315
- [5]<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54&tblI>

d=DT_HIRA4A&vw_cd=&list_id=&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K1&path=#

[6] Se-Hwan Jung,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new measures of oral health care personnel division", The Journal Of The Korean Dental Association, pp. 1-7, 2003

[7] Jeong-Seong Hwa, An-Sang Heon, Hong-Sug Seon, Choe-Yeon Hui, Song-Geun Bae, "Analysis of Job Satisfaction of Dental Residents", J Korean Acad Dental Health, Vol. 27, No.3, 2003

[8]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C%9D%98%EB%A3%8C%EA%B8%B0%EC%82%AC#liBgcolor1>

[9] http://www.k-lpn.or.kr/nurse/nurse_03.php

[10] <http://www.career.go.kr/cnet/front/base/job/jobView.do?SEQ=1257#tab1>

[11]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C%9D%98%EB%A3%8C%EA%B8%B0%EC%82%AC%EB%B2%95#liBgcolor0>

[12] Hae-Young Kim, Sun-Kyoung Lee, Yong-Duk Park, "Conditions and performance of the public health dentist for public oral health activities", J Korean Acad Dental Health, Vol. 32, No.1, 2008

[13] Jeong-Ran Park, "Study on the business expansion of dental hygienists", 2004

[14] Yong-Yu Kang, "An analysis of the completion and recognition of preceptorship course for fresh-dental hygien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2008

[15] Eun-Hee kim, "A study on the work of dental hygieneists and nurse aides", The grauate school of public health Inje University, 2004

[16] Dae-Jin Cheon, Kyu-Hwan Lee, Ja-Won Cho, "Dentist's opinions for the roles of the dental assistant nurse in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Oral Health, Vol.34, No.1, pp. 98-106, 2010

[17] Yoon-Hee Cho, "Recognition of the job jurisdiction and job satisfaction of the dental hygienist and nursing aids", Kyungwon University, 2007

[18] Yong-Soon Ahn, Sun-Jung Shin, Se-Hwan Jung, Young-Soo Lee, Do Sun Lim. "Comparison of job description and turnover trend among dental hygienist and assistant nursing in the dental clinic", J Korean Acad Dental Health, Vol. 30, No.3, 2006

저자소개

이 숙 정 (Sook Jeong Lee)

[정회원]



- 2001년 2월 :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석사)
- 2013년 8월 : 영남대학교 보건대학원(박사)
- 2007년 3월 ~ 2013년 2월 : 김천대학교 치위생학과 조교수

· 2014년 3월 ~ 2015년 현재 : 신라대학교 치위생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해부생리학, 특수집단, 의료법규

조 혜 연 (Hye Yeon Cho)

[정회원]



- 2009년 2월 : 동부산대학 졸업
- 2014년 3월 : 신라대학교 치위생학과 석사과정
- 2014년 7월 ~ 현재 : 굿월치과병원

<관심분야> 의료분쟁, 직무수행, 직무만족도